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2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1040025269		고유번호 1117013200-3-03100017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14세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지번 310-1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4 (동빙고동)		
※대지면적 555 m ²	연면적 0 m ²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m 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m ²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아파트		층수 지하 : 층, 지상: 5층
※건폐율 0 %	※용적률 0 %		높이 19.2 m		지붕 평옥개		부속건축물 동 m ²
※조경면적 m ²	※공개 공지/공간 면적 m ²		※건축선 후퇴면적 m ²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10.45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7.09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103.79	주1	4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7.09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5.89	주1	5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7.09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7.09	주1	옥탑0층	철근콘크리트조	옥탑	41.47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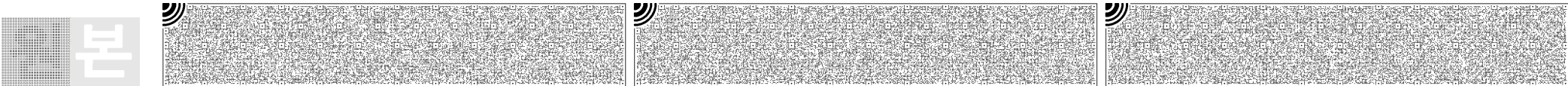
서울시 용산구청장

담당자 :
전화 :

발급일: 2026년 1월 7일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m²]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14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310-1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4 (동빙고동)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허가일
설계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 하수처리시설	※ 급수설비(저수조)		착공일
공사감리자			기계식	대 ㎡	대 ㎡	대 ㎡		형식	지상	개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	대 ㎡	대 ㎡		용량	지하	개 ㎡	사용승인일
										1972.9.4.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비적용				
			특수구조 건축물		지하수위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미해당		G.L m		
			기초형식 [] 지내력기초 t/㎡		구조설계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종류	점검유효기간
			[] 파일기초		[] 동적해석법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10.8.13.	건축과-11527(2010.8.12)호에 의거 전유부 호명칭 변경(관리실 → 제101호)	2011.10.4.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건축면적:0' → '397.09',용적율 산정용 연면적:0' → '1984.25')) 직권변경	
2011.4.13.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층별개요(층번호:3' → '1')) 직권변경	2016.5.17.	건축디자인과-10192(2016.05.16.)호에 의거 전유부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1040025269	고유번호	1117013200-3-03100017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14세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지번	310-1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4 (동빙고동)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16.6.14.	특신헌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층별 1층 → 지1층] 건축디자인과-12644(2016.06.14)호에 의거 지1층 특 실 용도변경[아파트 103.79㎡→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03.79㎡] - 이하여백 -		

297mm×210mm[백상지(80 /㎡)]

